

- 서대구역 서한이다음 더퍼스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의거 귀하의 입주대상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서대구역 서한이다음 더퍼스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자격확인 서류 제출 및 방문을 예약제로 운영하오니, 필히 서류제출 시간을 당사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구역 서한이다음 더퍼스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첨자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으로 입주대상자(당첨자)의 청약제한사항 및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요청하여, 또한 계약체결 전 입주대상자로부터 자격확인서류를 제출 받아 입주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또한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입주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간의 소명기간을 주어 부적격사항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합니다.
만약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지 못한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8항에 따라 당첨(분리세대, 전산검색 소요시간 등으로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및 계약취소 됨)을 취소하며, 당첨이 취소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방법안내 (예비입주자 포함)

- 제출방법 : 견본주택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당사 홈페이지 양식 참조(<http://wd-seohan1.com>)
- 견본주택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156-18
- 당첨 유형별 자격 확인 제출서류 :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 참조
-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으로 당첨자 사전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방문을 예약제로 운영하오니, 필히 서류제출 방문 시간을 당사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방문안내

- 방문기간 : 2020.08.25(화) ~ 2020.09.03(목) 16:00까지(10일간)
- 예약방법 : 당사 홈페이지 접속 → 당첨자 확인 → 예약 → 방문 → 서류제출
- 홈페이지 주소 : <http://wd-seohan1.com>
- ※ 견본주택 방문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 방문은 당첨자 동반 1인까지만 가능합니다.
-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임산부, 노약자, 영유아의 방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방문 및 서류검사 안내



※ 예비입주자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TEL : 053-327-0500 / FAX : 053-756-8137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시대구역

서한이다음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서약서	-	· 각 청약별 자격확인	건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	신청자 구비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신청자 구비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신청자 구비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발급기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개년도 발급 요망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	신청자 구비
	○		출입국 사실증명서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개년도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		출입국 사실증명서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개년도 발급(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신청자 구비
	○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신청자 구비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개년도 발급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개년도 발급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신청자 구비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 및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사실확인	
	○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30세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신청자 구비
	○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자녀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미성년 자녀가 만18세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신청자 구비	
대리 계약 추가 서류	○	계약자 인감증명서(위임용) 및 인감도장	-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신청자 구비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위임장	-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부적격 통보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족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상기 서류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